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39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단2180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국민은행

판결 선고 2016. 1. 14.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39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B은 200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9호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0. 위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② 또한 B은 그 무렵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95호로 위 약정금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그 후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2007나115661호 사건에서 2009. 2. 13. "D 등은 연대하여 B에게 247,105,912원 및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5. 28.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2) B이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0. D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9. 11. 16.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발송 무렵 D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도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권리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추심을 하거나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나. B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본안소송으로 청구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B은 2009. 7. 17.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았는데, 원고나 B은 이러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3) 집행법원은 2010. 4.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B에게 ①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32,655,334원을 배당하고, ②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146,949,0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1096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배당액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2010. 7. 22.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54(본소), 56126(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B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1. 7. 12. 이 사건 공탁금 중 40,008,33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도 그 양수의 효력이 미쳐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B은 그에 관한 권리를 잃는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음에 따라 B에 대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함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승계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 배당액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공탁 후 피고가 B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에 앞서 B이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잃고 원고가 이를 가지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B에게 있음을 주장하지 못하며, 결국 B의 추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가압류채권자 B에게 배당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40,008,33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법률상 원인 결여 및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